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1998. 9. 23 조례 제1098호 개정 2008. 6. 16 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 일부개정 2011. 4. 15 조례 제1767호(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 일부개정 2011. 8. 9 조례 제1786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 일부개정 2014. 8. 14 조례 제2005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일부개정 2015. 5. 28 조례 제208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일부개정 2015. 9. 30 조례 제2118호(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 일부개정 2018. 1. 31 조례 제233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일부개정 2018. 7. 31 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 일부개정 2018. 8. 30 조례 제240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법 시행령」제62조에 따라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08. 6. 16, 2011. 4. 15, 2015. 9. 30〉
- 제2조(심의회의 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〈개정 2014. 8. 14, 2018. 7. 31. 2018. 8. 30〉
 - 1. 도로굴착사업관련 행정기관(군부대 포함)의 공무원
 - 2.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
 - 3. 도로 및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〈개정 2018, 7, 31〉
- 제3조(심의회의 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 〈개정 2020. 6. 19〉
 - 1.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·조정
 - 2.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
 - 3.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

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4.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
- 5. 도로굴착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
- 6. 지리정보시스템(GIS)관련 사항
- 7.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
- 제4조(위원장의 직무등) ① 위원장은 심의회("소심의회"를 포함한다)를 대표하고, 회의를 총괄한다. 〈개정 2018. 7. 31〉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했하다.
 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5조(심의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심의회("소심의회"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심의회는 안건의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6조(소심의회의 구성) ① 심의회는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시기등을 심의·조정하는 중복굴착소심의회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 책을 심의·조정하는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소심의회는 소심의회별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호에 해당위원이 고루 안배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도로굴착사업 행정기관(군부대 포함)의 공무원
 - 2. 당해분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
 - 3. 당해분야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제7조(소심의회의 기능) ①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조 정한다.
 - 1.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
 - 2.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등

-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· 조정한다.
- 1.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
- 2.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
- 3.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
- 4.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
- 5. 지리정보시스템(GIS)관련 사항
- 6.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
- 제8조(소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) ①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당해년도에 시행할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등을 종합·조정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부득이한 사유로 당해년도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·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.
 -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 - ③ 위원장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대책소심의회를, 도로굴착사업 시기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굴착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·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·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소심의회 심의·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·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.
 - ④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이 상의 소심의회를 통합소집하여 심의·조정할 수 있다.
 - ⑤ 위원장은 안전대책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소속 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.
- 제9조(심의·조정결과의 통보)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·조정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·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 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간사 및 서기)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 및 서기는 도로과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 〈개정 2015. 5. 28, 2018. 1. 31〉
 -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 - 1. 회의일시 및 장소
 - 2. 위원 참석현황(서명)
 - 3. 심의안건
 - 4. 심의 · 조정 사항
- 제11조(안건의 배부)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수당등)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의하여 수당·여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 〈개정 2008. 6. 16, 2011. 8. 9, 2018. 7. 31〉
- 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행하여진 심의·조정사항 및 행정처분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부칙〈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1. 4. 15 조례 제1767호,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〉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1. 8. 9 조례 제1786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⑭ 까지 생략

①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.

제12조 중 "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"를 "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"로 한다.

① 부터 ② 까지 생략

부칙〈2014. 8. 14 조례 제2005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하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③ 광명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"건설교통국장"을 "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"으로 한다.

③ 부터 ④ 까지 생략

부칙〈2015. 5. 28 조례 제2086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-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도로과장"을 "광역도로과장"으로 한다.

② 및 ③ 생략

부칙〈2015. 9. 30 조례 제2118호,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8. 1. 31 조례 제2336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 하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④ 「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광역도로과장"을 "도로과장"으로 한다.

부칙〈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〈2018. 8. 30 제240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 하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② 까지 생략

②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"시민행복국장"을 "안전건설교통국장"으로 한다.

② 부터 ④ 까지 생략

부칙〈2020. 6. 19 조례 제2646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